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11. 29
- 다. 의안번호 : 제2005 - 81호
- 라. 심의일자 : 2005. 12. 5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구분	소재지	물건	수량 (㎡)	예정금액 (백만원)	비 고
행정 재산	거창군 일원(미정)	건 물	115	95,000	울리 보건진료소
		토 지(답)	500	35,000	
“	위천면 장기리 522-4	토 지(답)	1,555	10,500	위천소방 파출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울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 울리보건지소는 총사업비 130백만원중 KBS방송국이 50백만

원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나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닌 KBS방송국의 통보에 의한 것이나, 보건복지부의 대상지선정 협조에 의한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계획서에 의하면 율리보건지소는 공사기간 2006.2 ~ 3.6까지 완공하여 2006. 3. 6(월) 18:00 <KBS 6시 내고향> “백년가약”편에 방송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방송시점에 맞추기 위하여는 부지매입, 설계 및 시공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대상지역은 경지정리 되지 아니한 농업진흥 지역으로 건축행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위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구입

○ 위천소방지서는 본서와 15km이상 떨어져 있어 소방행정추진에 취약하여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 소방지서를 소방파출소로 승격코자 파출소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소방관련 행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종전 소방관련 시설 건립시 부지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부담하여 해당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하였으나, 도의 방침변경에 따라 금번 소방파출소 건물부지에 대하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나 토지는 거창군 명의로 건물은 도 명의로 등기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현 건물은 도로와 100m이상 떨어져 있고 폭이 4m 정도여서 신속한 출동과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상존하여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국,지방도와 접한 적정규모의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동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장비가 보강되면 대형소방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도로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대상부지는 관리지역으로 행위가능한 것이며, 기타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 이에 대한 예외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 제도가 있음.